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 나. 국가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 포함사항, 수립 지원 및 실적 제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 환경교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사회환경교육의 방법(집합 또는 원격) 및 교육시간(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등을 정함(안 제15조)

- 마.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환경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을 규정함(안 제16조)
- 바.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정하고, 환경교육사를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사의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 환경교육주간을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 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자. 환경교육 포상내용, 포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포상기준 등을 사전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
-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범위,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전 국가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제3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국가계획을 고려한 시·도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도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시·도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시·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도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환경부차관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심의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과위원회의 운영, 간사, 수당·여비 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영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5조(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죄를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2. 「화학물질관리법」
3. 「토양환경보전법」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환경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기본과정 교과목, 관련 전공과목 및 유사과목 등에 대한 인정범위 및 방법, 과정별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환경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5.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 제19조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할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할 것
3. 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것
4.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서 교부 등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환경교육주간의 실시) ① 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별표 2에 따른 환경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내용, 수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포상기준 등을 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상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2. 공공기관·민간기관의 환경교육 활동 및 사업 현황
3. 공공기관·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인력 현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의 요건과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실태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추진 업무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1조 및 이 영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접수 및 심사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별표 1]

환경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각 등급별 자격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등급에 따른 자격을 부여한다.

등급	자격기준
환경교육사 1급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환경교육사 2급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환경교육사 3급	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3급 기본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유사과목 포함)으로 이수하고 3급 필기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3급 실무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 1.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 기관·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박사, 석사), 환경 관련 학사학위, 3급 기본과정 교과목과 관련 전공과목(유사과목 포함)의 인정 등은 별도로 정한 고시에 따른다.

2. 과정별 교육 내용

과정별	교육 내용		시 간		
	구분	과목명	계	이론	실습
1급 과정 (120시간 이상)	계		120	60	60
	기본 (51시간 이상)	생태문명의 이해	9	9	-
		조직 운영 및 인재관리	9	9	-
		사회적 경제 이해	6	6	-
		회계 및 재무관리	9	9	-
		환경교육과 리더십	6	6	-
		선택교과	12	12	-
	실무 (69시간 이상)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9	-	9
		환경교육 세미나	12	-	12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12	6	6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12	-	12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24	3	21
2급 과정 (144시간 이상)	계		144	84	60
	기본 (72시간 이상)	환경과 사회	6	6	-
		통합적 환경탐구	15	15	-
		환경교육정책 및 법규	6	6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12	12	-
		인적자원 관리	9	9	-
		선택교과	30	30	-
	실무 (72시간 이상)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12	-	12
		환경교육 사업 기획, 평가	24	-	24
		환경교육 홍보·마케팅	9	3	6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12	3	9
		환경교육 전시 관리	9	-	9

3급 과정 (144시간 이상)	계		144	93	51
	기본 (72시간 이상)	환경과 철학	6	6	-
		환경교육론	12	12	-
		환경생태학	12	12	-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	15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	9	-
		선택교과	18	18	-
	실무 (72시간 이상)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	6	1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	6	18
		지역환경문제 탐구	12	3	9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	3	9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	3	3

- 비고 : 1. 각 양성과정은 기본과 실무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기본과정은 참가자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는 별도로 실시한다.
2. 실무과정은 해당 양성과정의 기본과정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참가자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정평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3.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

1. 대상 기관·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해위	근거 법 조항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150	250	300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항	50	80	100
다.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 받지 않은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0	15	2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교육팀	
연 락 처	(044) 201 - 6532